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52
----------	-------

발의연월일 : 2018. 12. 10.

발의자 : 강석진 · 김성찬 · 원유철
박덕흠 · 정용기 · 이은권
송언석 · 박완수 · 김정재
추경호 의원(10인)

제안이유

2017년 10월 31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의무자조금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농수산업자의 범위와 의무자조금단체의 개념, 의무거출금 납부자 우선지원의 실효성, 통계자료의 개인정보 포함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됨. 이에 따라 의무자조금단체와 임의자조금단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임의로 회원가입한 농수산업자만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는 해당 농수산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며,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농수산업자들도 의무자조금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야 함.

또한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한하고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자료를 자조금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해당 농수산업자로 구성된 의무자조금단체와 임의로 가입한 농수산업자로 구성된 임의자조금단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 제6조제1항 등에서 의무가입 대상과 회원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임의로 가입한 농수산업자만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찬반투표의 결과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는 해당 농수산업자도 찬반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나. 모든 농수산업자가 의무거출금을 납부하는 상황에서 의무거출금 납부자에 대한 우선지원은 그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법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고 의무거출금 미납자를 실효성 있게 제재하기 위하여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2).

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제공 등을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무자조금 설치안내와 대의원선거, 의무거출금 부과 및 의무자조금 조성, 경쟁력 강화와 수급조절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업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통계자료를 자조금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의무자조금단체”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해당 농수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자조금단체를 말한다.

10. “임의자조금단체”란 임의로 가입한 농수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자조금단체를 말한다.

제9조제1항 중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의무자조금단체”라 한다)에”를 “의무자조금단체에”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중 “납부자에 대한 우선지원”을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따라”를 “따른”으로, “납부한”을 “납부하지 아니한”으로, “우선적으로 각종 지원 등을 할”을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임의자조금단체”라 한다)는”을 “임의자조금단체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현황”을 “개인정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 8.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u>9. “의무자조금단체”란 의무적 으로 가입하는 해당 농수산업 자를 회원으로 하는 자조금단 체를 말한다.</u> <u>10. “임의자조금단체”란 임의로 가입한 농수산업자를 회원으 로 하는 자조금단체를 말한 다.</u>
제9조(총회의 설치 등) ① <u>의무자 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 하 “의무자조금단체”라 한다)</u> 에 총회를 둔다. ② ~ ④ (생 략)	제9조(총회의 설치 등) ① <u>의무자 조금단체에----- ----- -----.</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의무거출금 <u>납부자에 대한 우선지원</u>)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무거출 금을 <u>납부한</u> 농수산업자에 대 하여 <u>우선적으로 각종 지원 등을</u> 할 수 있다.	제19조의2(의무거출금 <u>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u>) ----- ----- ----- <u>따른</u> ----- ---- <u>납부하지 아니한</u> ----- --- <u>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제한할</u> --.
제24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제24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p><u>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임의자조금단체”라 한다)</u>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를 둔다.</p> <p>1. ~ 4. (생략)</p> <p>제28조(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 · 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 및 농수산업자 <u>현황</u>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 · 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관련 통계등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u>임의자조금단체는</u>-----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28조(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 · 관리 등) ① ----- ----- ----- ----- ----- <u>개인정보</u>-----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